



광진구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2016년 광진구 생활임금제도 시행 알림

1. 일자리경제과-38866(2015. 9.17)호 관련입니다.

2. 광진구 생활임금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아래와 같이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니, 사업부서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2016년 광진구 생활임금

가. 생활임금 금액 : 월액 1,504,800원(시간급 7,200원)

나. 생활임금 적용방법

-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생활임금 기준월액(1,504,800원)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그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추가 지급.

다. 보수월액 포함 임금항목

- 기본급 + 모든 수당 [단, 시간외근무(초과,야간,휴일)수당 제외]

※ 시간외 근무수당(초과,야간,휴일근무수당)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산정되지 않으며, 기존에 지급하던대로 지급.

라. 생활임금 적용대상 : 광진구 및 구 산하 출자·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

- 전일제 근로자(1일 8시간,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상)를 대상으로 하며, 아래 근로자는 적용제외됨.

☞ 적용제외대상

: 공공근로·지역공동체 등 직접일자리사업, 국·시비 보조사업 근로자

단시간 근로자(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) 및 1개월 미만 채용 근로자

단체협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상용직 근로자

붙임 2016년 광진구 생활임금 매뉴얼 1부. 끝.

광진구청장

수신자 서광담당관과 1-28,보건소 1-5,구의회사무국,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,서광동 1-15

주무관 **양현경** 일자리지원팀장 **박성현** 일자리경제과장 **김정애** ★기획경제국장 01/07
고재풍

협조자

시행 일자리경제과-832 () 접수 ()

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/ <http://www.gwangjin.go.kr/>

전화 02-450-7056 /전송 02-457-0700 / 대시민공개

“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, 길찾기가 즐거워집니다”